

대통령령 제 호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이러닝(전자학습)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”을 “전문가의 의견 수렴을”로 한다.

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제3호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”을 “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”을 “그 지정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절차) ① · ② (생 략)		제3조(기본계획의 수립절차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이 러 닝 진 흥 위 원 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		<삭 제>		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생 략)		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		<삭 제>		
③ (생 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④ 시행계획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1월 30일까지 확정된다.		④ -----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----- -----.		
제6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		<삭 제>		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법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 등)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

<삭 제>

라 위원을 지명 또는 추천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 또는 추천을 철회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② 위원장은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제8조(관련 전문가의 출석 등) 위원회는 안건 심의, 그 밖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

<삭 제>

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
할 수 있다.

제9조(수당 지급) 위원회에 출석
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
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
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
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
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
니하다.

제10조(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)
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
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
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
정한다.

제12조(표준화 사업의 대행) ①
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“대통
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
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”란 다
음 각 호의 연구소·기관 또는
단체(이하 이 조에서 “대행기
관”이라 한다)를 말한다.

1. · 2. (생략)

3.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
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
하는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
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

<삭 제>

<삭 제>

제12조(표준화 사업의 대행) ① -

-----.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-----

이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</u> 연구소·기관 또는 단체 ② (생략) 제16조(이러닝센터의 지정 등) ① · ② (생략)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</u>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④ (생략)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,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u>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</u>을 취소할 수 있다. ⑥·⑦ (생략)	-- <u>인정하는</u> ----- ----- -- ②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이러닝센터의 지정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<u>제1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그 지정</u> ----- ----- ----- ⑥·⑦ (현행과 같음)
--	---